

영국의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 정보공개제도

I. 여는 글

올 2016년 초부터 경찰청은 소위 “데이트 폭력(dating violence)”을 근절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국 경찰서에서는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 구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연인 간 폭력 피해 집중신고기간 : 2016년 2월 3일~3월 2일’을 약 한달 간 운영하여 피해자 보호 및 적절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의 범주가 아닌 당사자 문제로서만 치부 및 방치되어 피해가 발생한 후의 조치만 있어왔다. 이에 경찰청은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폭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¹⁾

이번 신고기간 동안 1,279건이 접수되었고, 868명이 검거, 이 중 61명이 구속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61.9%, 체포·감금·협박 17.4%, 성폭력 5.4%” 순으로 집계 되었으며, “살인 및 살인 미수 역시 각각 1건씩 발생했다.”²⁾ 이와 같이 경찰이 연인 간 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이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가정폭력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제3자의 초기 개입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은 적절해 보인다.³⁾ 그러므로 경찰청은 지속적으로 데이트

1) 경찰청 보도 자료,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사이버 경찰청, 2016. 2. 2: <http://police.go.kr/m/bbs/view.do?nttId=18111&bbsId=B0000011&menuNo=2600013&delCode=0> (2016년 6월 5일 접속).
 2) 김진수, “‘데이트폭력과의 전쟁’ 나선 김현기 경찰청 수사기획관”, 신동아, 2016. 3. 24: <http://shindonga.donga.com/3/all/13/528310/1> (2016년 6월 3일 접속).
 3) 김남훈, “데이트 폭력 ‘클리어법’ 보단 초기 신고를”, 머니투데이, 2016. 3. 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30713100732260> (2016년 6월 5일 접속).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영국에서 시행 중인 ‘클레어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클레어법(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Clare’s Law)’은 2014년 3월 공식적으로 영국 전역(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자 시행된 제도(scheme)이다. 영국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밝히면서 네 곳의 경찰서에서 14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100건 이상의 잠재적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거두었다고 했다.⁴⁾ 이런 맥락에서 한국 경찰청이 검토하는 영국 ‘클레어법’은 우리의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수립과 방향 설정에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II. ‘클레어법’의 도입 배경

클레어법은 2009년 클레어 우즈(Clare Woods)라는 이름의 여성이 영국 맨체스터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살해된 것이 계기였다. 당시

36세의 싱글맘이었던 클레어는 페이스북에서 만난 조지 애플턴(George Appleton)과 만나 데이트를 이어오다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되었고, 상대인 조지 역시 곧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 클레어의 가족과 친구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가장 경악했던 점은 가해자인 조지가 그 동안 데이트 상대였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력, 위협 및 납치 경력이 있었던 강력 전과 사범이었다는 데에 있었다.⁵⁾ 클레어는 자신의 아버지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에게 조지의 범죄 경력이라곤 단지 도로교통 위반이라고 말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조지는 이미 2002년에 여성에 대한 학대로 인해 3년 수감된 전력이 있었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한 해 전인 2008년에도 여자 친구에 대한 6개월의 접근 금지 명령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다. 특히 클레어 사망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가 그 동안 데이트 했던 여성들에게 가했던 병적인 범죄 행위가 끝도 없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⁶⁾

- 4) Home Office, The Rt Hon Norman Baker and The Rt Hon Theresa May MP, “News story: Clare’s law to become a national scheme”, Part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https://www.gov.uk/government/news/dares-law-to-become-a-national-scheme> (2016년 5월 15일 접속).
- 5) Brendan Carlin, “Clare’s law: After mother’s brutal murder, women to get right to check abusive partners’ criminal records”, Daily-Mail, 2011. 7. 16: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015564/Clares-law-After-mothers-brutal-murder-women-right-check-abusive-partners-criminal-records.html> (2016년 4월 20일 접속).
- 6) 실제 이 사건은 영국 Virgin Media의 사건고발 채널인 Crime Investigation에서 주요 사건으로 다루어졌다: <http://www.crimeandinvestigation.co.uk/> (2016년 5월 30일 접속).

이후 그녀의 아버지인 마이클 브라운은 데이트 상대의 범죄이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클레어법’ 도입을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주도하였다. 클레어가 살던 지역의 국회의원이자 전직 내무장관(Home Secretary)인 헤이즐 블레어스(Hazel Blears)는 이에 동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클레어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은 종종 그들의 파트너의 과거 관계에 대해 모르며, 이들의 파트너가 폭력에 관한 전과가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이들은 관계를 시작한다. 클레어의 비극적인 죽음은 여성들이 현재 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들 여성에게 파트너의 과거 폭력전과를 알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그들에게 정작 닥친 위험에 대해서 알 수 없다.”⁷⁾

이 캠페인이 영국 내에서 쉽게 공감대를 얻게 되었던 이유 역시 데이트 폭력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0년 한 해에만, 94명의 여성과 21명의 남성이 그들이 데이트했던 파트너와 연인들에게 살해당했다.⁸⁾ 이 캠페인이 확산되는 시점인 2011년은 영국정

〈표 1〉 영국 가정 내 폭력 기소와 구속 현황⁹⁾

	기소건수	유죄선고	유죄 판결 비율
2005/06	49,782	29,719	59.7%
2006/07	57,361	37,383	65.2%
2007/08	63,819	43,977	68.9%
2008/09	67,094	48,465	72.2%
2009/10	74,113	53,347	72.0%
2010/11	82,187	59,101	71.9%
2011/12	79,268	58,138	73.3%
2012/13	70,702	52,549	74.3%

7) James Meikle, “Women may be warned of partners' violent pasts under new ‘Clare's Law’”, The Guardian, 2011. 7. 17: <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1/jul/17/women-warned-partners-clares-law> (2016년 5월 30일 접속).

8) Jonathan Petre, “Women will get right to ask for new boyfriends' police files under controversial Clare's Law initiative”, DailyMail, 2012. 7. 14: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173645/Clares-Law-initiative-Women-right-ask-new-boyfriends-police-files.html> (2016년 5월 25일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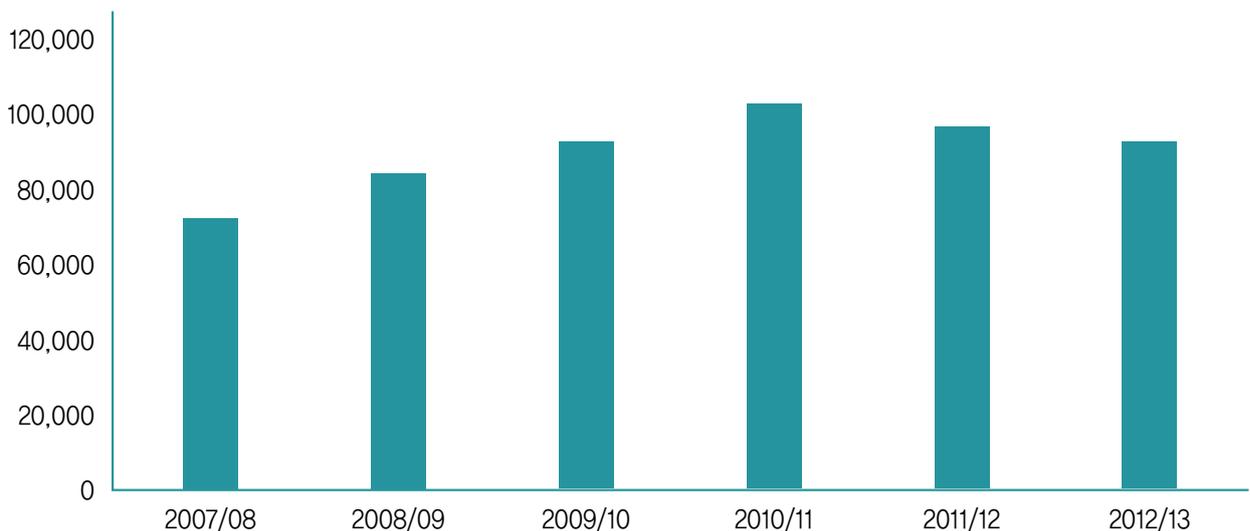
9) Aliyah Dar, “Domestic violence statistics SN/SG/950”, House of Commons Library, 2013. 12. 24, p. 4.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CPS),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Crime Report 2012–2013, Public Accountability and Inclusion Directorate, 2013에서 재인용: https://www.cps.gov.uk/publications/docs/cps_vawg_report_2014.pdf (2016년 6월 3일 접속).

부 주도로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확증 제도(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VAWG) Assurance system)’가 도입되었다. 즉, 영국정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기에 클레어법이 여론 및 정부 차원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 확증 제도 도입 후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비율이 제도가 도입된 후 2년도 되지 않아 74.1%로 상승했고(<표 1> 참조),¹⁰⁾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범죄의 비율 역시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표 2> 참조).

가정 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거의 여성과 어린이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위의 통계는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확증 제도’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2012/2013년의 88,110건은 여전히 2007/2008년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¹²⁾ 물론 이 제도는 여성 및 소녀에 대한 범죄의 구속 기소율을 높여 강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적으로 높이는 데에는 적절하다는 장점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 역시 뚜렷하다.

<표 2> 검찰에 보고된 가정 폭력 건수¹¹⁾



10)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CPS), op. cit., 3면.

11) Ibid.

12) Ibid.

이런 측면에서 현직 내무장관인 테레사 메이(Theresa May)는 2012년 6월 16일, 내무부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한 주에 두 명의 여성이 그들의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백만의 여성이 그들의 집에서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서 이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구체화시킬 것을 밝혔다. 따라서 내무부는 “그웬트(Gwent)와 윌트셔(Wiltshire) 지역에 처음으로 소위 ‘클레어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정 폭력 정보 공개 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¹³⁾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시범실시 후 이 제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어느 정도 입증되자, 영국정부는 2014년 3월부터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Ⅲ. ‘클레어법’의 주요 내용

클레어법의 시행으로 어떤 파트너와 데이트 중인 여성 및 그 여성과 관련 있는 제3자는 데이트 상대에 대한 폭력 관련 정보를 경찰로부터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소개에 앞서 영국에서 규정한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¹⁴⁾

2013년 3월, 영국 내무부는 가정 내 폭력 및 학대에 대한 개념의 범위를 확대해 규정했다. 변경된 규정에 의하면 남녀 구분 없이 만 16세부터 17세¹⁵⁾의 청소년이 폭력 및 학대의 피해 대상으로써 포함되었으며, 강압적(coercive)이고 통제(controlling)를 목적으로 한 모든 행위 역시 폭력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폭력이란, 16세 혹은 그 이상인 자가 자신의 사적인 파트너 혹은 가족들로부터 심리적, 육체적, 성적, 금전적 및 감정적인 수단으로 통제, 강압, 위협, 폭력 및 학대가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⁶⁾ 그러므로 클레어법의 도입으로 영국 여성들은 위에서

13) Home Office and The Rt Hon Theresa May MP, 「Clare's Law pilot to stop domestic violence begins」 (16 July 2012): <https://www.gov.uk/government/news/clares-law-pilot-to-stop-domestic-violence-begins> (2016년 4월 20일 접속).

14) 영국은 데이트 중 발생하는 강력범죄 역시 가정 내 폭력(domestic violence)의 범주 속에서 다루고 있다.

15) 영국은 만 18세가 성인이다.

16) John Woodhouse and Noel Dempsey, 「Domestic violence in England and Wales」, 『Briefing Paper』 No.6337 (House of Commons Library, 2016. 5. 6).

규정한 모든 범주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정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클레어법이라고 불리는 ‘가정 폭력 정보 공개 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제도는 데이트 상대로부터 잠재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자(A)가 그 데이트 상대의 특정 개인 정보 - 과거 폭력 및 혹시 A의 신변에 위협과 관련될 수도 있는 - 를 경찰로부터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자인 A의 부모, 형제 및 자매,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 역시 A의 안전을 목적으로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A와 제3자가 A의 데이트 상대에 대한 범죄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는 다음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¹⁷⁾

1. Stage 1: 지원서 작성(Making an application)

A와 제3자가 일단 그 지역 경찰서에 방문하여 경찰관 혹은 경찰 업무 담당자를 만나 관련 상담을 진행시키게 된다. 방문자는 우선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즉각적인 우려가 있어 보일 경우, 경찰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일련의 검토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경찰에서 본인의 파트너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보고를 하면 경찰은 그 사건을 조사하고 그 파트너를 체포할 수 있다. 제3자 역시 앞의 예와 같이 A의 파트너에 의해 A가 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전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인지된 즉시 규정된 법에 의해 이를 기록하고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A에 대한 보호가 급박하게 필요하지 않은 이상 A의 파트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 Stage 2: 면담(Face to face meeting to complete the application)

Stage 1의 결과에 따라 A는 관할 경찰서의 지역 치안 부서(Police’s Community Safety)의 경찰관과 직접 대면을 할 수도 있다. 이 면담은 이 분야에 특화된 경찰관과 이루어지게 되며, 데이트 폭력의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17) 본 절차는 영국 경찰청이 제공하는 가이드에 근거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The Metropolitan Police, “Clare’s Law: The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http://content.met.police.uk/Article/Domestic-Violence-Disclosure-Scheme---Clare-Law/1400022792812/1400022792812> (2016년 3월 30일 접속).

이 과정에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2가지 이상의 ID가 필요하며, 적어도 하나는 사진이 포함된 ID이어야 한다. 여기서 ID의 범주는 여권,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의 청구서 (household utility bill), 은행계좌 혹은 출생증명서를 포함한다.

여기서 채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A가 어느 정도 데이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또한 이 정보를 통해, 경찰은 유관 기관 - 사회복지과(Social Services), 교도소(the Prison Service), 보호감찰과(the Probation Service) - 과 협력하여 A에 닥칠지도 모르는 모든 범죄를 구성한다.

경찰은 A 혹은 제3자가 지원서를 제출하면 위의 과정을 통해 모든 검증을 마쳐야 하며, 만약 필요할 경우 최초 지원서를 제출한 후 최대 35일 이내에 A의 데이트 상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A가 급박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즉각적인 보호를 할 것이다.

3. Stage 3: 정보 공개를 위한 경찰과 유관기관의 포럼(Multi-agency forum considers disclosure)

경찰은 위에서 언급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A 및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논의한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

이외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포럼은 A의 데이트 상대의 범죄 기록 공개가 A의 안전을 위해 필요, 적법 및 적절한지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공개로 결정이 나게 되면, 이 포럼은 공개되는 자료를 누가 수령할 것인지 결정하는 한편 A의 상황에 적합한 전반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4. Stage 4: 잠재적 공개(Potential Disclosure)

만약 A의 파트너가 폭력 관련 범죄 기록이 있거나 이와 관련된 다른 정보가 존재하면 경찰은 추가 범죄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A의 파트너에 관한 정보를 A 혹은 A를 보다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제공한다.

한 개인의 과거 기소사실은 기밀로 다루어지며 그에 관한 정보는 단지 적법하고, 적절하며 추가 범죄에 대한 우려가 급박한 상황이 있을 시에만 공개될 수 있다.

만약 조사결과가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급박한 증거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A는 이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될 것이다. 이는 A의 파트너의 폭력 관련 기록이 없거나 A에 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혹은 일부 폭력 관련 정보가 있음에도 긴급하게 정보를 제공할 사유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A의 파트너의 관련 범죄 경력이 경찰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A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할 만한 사유가 아직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지만 여전히 A의 파트너로부터 우려할만한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경찰 및 다른 유관 기관과 협력하고 조언과 지원을 바탕으로 A를 보호할 수 있다.

5. 정보 취급 및 지원

A 혹은 제3자가 일단 A의 파트너의 과거 범죄기록을 받게 되면 기밀로서 취급해야 한다. 이 정보는 단지 A의 안전을 위해서 제공된다. 경찰 혹은 이 정보를 제공한 자와의 논의 없이 무단으로 이 정보를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A 혹은 제3자는 제공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A의 안전을 위한 수단 강구
-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수단 강구
- 경찰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 기대
- A의 안전 관련 조언을 위한 목적

경찰은 정보를 요청한 A 혹은 제3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타인과 논의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경찰은 A가 데이트로 인해 위협에 처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만약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무단으로 공개했을 경우에는 경찰은 정보 보호법 55항 (Section 55 of the Data Protection Act, 1998)에 의거하여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A의 과거 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데이트 폭력에 관한 정보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것이며 폭력 발생 전 나타나는 어떤 경고 사인 등에 대해서 조언할 것이다.

A와 제3자는 수많은 전문 서비스와 기관을 통해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인지하며 공권력이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IV.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클레어법은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잠재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그 잠재적 피해자의 지인 역시 적극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무엇보다 연인간의 폭력 사건을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에서도 실시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제도의 국내 적용을 검

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해악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출간한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2015)」에 의하면, 2005년 이후 10년간의 데이트 상대 대상 살인 및 성폭력 등의 강력 사건 범죄자의 76.7%가 전과자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본 연구서는 영국의 클레어법과 마찬가지로 연인 간 폭력을 예방할 수단으로서 상대의 범죄 전력을 허용하는 데에 긍정적인 의견 -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찬성’ (48%), ‘전적으로 찬성’ (38.8%) - 이 나와,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응답이 86.8%에 이르렀다.¹⁸⁾ 이러한 결과는 클레어법과 같은 제도의 정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말이 된다.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TF는 데이트 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 처벌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성과 상습성

등을 상세히 확인해 직접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말라고 가해자를 강력히 경고하는 업무” 역시 수행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추가 폭행 등 2차 가해를 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며 전화로 지속적인 협박을 하는 행위 역시 형사 처벌할 것임을 경찰청은 밝혔다.¹⁹⁾ 무엇보다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것과 같이 데이트 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76.5%에 이르러 가정폭력(1.9%)나 성폭력(2.1%)의 재범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감안하면,²⁰⁾ 이와 같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의 관심 증대는 분명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 하리라 본다.

따라서 클레어법 도입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사회적 변화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첫째, 데이트 폭력의 감소이다. 노팅햄 트렌트 대학의 법학 및 범죄학과(Law and Criminology)의 교수인 사만다 페드(Samantha Pegg)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클레어법]이 보다 알려지길 바랍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18) 임유진, “데이트 폭력 76.6%가 전과남...전과기록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 도입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 1. 25: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125010015623> (2016년 6월 5일 접속).

19) 이상일, “데이트폭력 형사가 직접 경고한다. 클레어법 제정 추진”, 미디어펜, 2016. 2. 2: <http://www.mediapen.com/news/view/115971> (2016년 6월 5일 접속).

20) 김용현, “연인간 폭력, 클레어법이 있다”, 국제뉴스, 2016. 4. 9: <http://m.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986> (2016년 6월 10일 접속).

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유용할 겁니다. 또한 보다 많은 지원금이 피해자들을 돕는 기관으로 몰릴 것이고, 사회는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²¹⁾ 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데이트 중 상대에 대한 폭력이 더 이상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범죄 발생 건수 자체를 줄이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둘째, 제3자에 대한 개입이다. 클레어법은 제3자 역시 데이트 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길을 열어 주었다. 이 법은 본질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이지만, 연인 사이의 일은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 개입하기 곤란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클레어법 도입 - 물론 영국의 제도를 완벽하게 따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 은 데이트 폭력이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니며 사회 문제로서 공론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제3자의 신고는 비교적 초기에 피해를 예방 혹은 방지하는 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 “사건 초기 제3자의 신고 및 개입이 지속적인 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데이트폭력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²²⁾

마지막으로 경찰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클레어법이 도입 된 이후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가정 폭력 문제 등의 교육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경찰관 역시 이 제도 도입 후 관련 사안을 대응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²³⁾ 한국 역시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 폭력의 문제는 현재 TF에서 다루고 있지만 다양한 교육 및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장차 이 문제에 대한 경찰관의 대응 역시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본다.

V. 결론

클레어법의 국내 도입은 이제 시대적 대세가 된 것 같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클레어법의 한국적 적용을 검토하는 데 있어 요청에

21) Elie Cullen, 「Clare's Law is saving lives one year on」, Nottingham Post, 2015. 3. 3: <http://www.nottinghampost.com/Clare-s-Law-saving-lives-year/story-26113351-detail/story.html> (2016년 6월 10일 접속).

22) 김훈남, “데이트폭력 '클레어법'보단 초기 신고를” 머니투데이, 2016. 3. 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0713100732260&coutlink=1> (2016년 6월 5일 접속).

23) Cullen, op. cit.

의한 정보 공개 결정을 경찰, 보건소 및 아동 보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정보결정위원회에서 확정한다고 밝혔으며, 공개되는 내용은 폭력 전과 의심자의 전과, 신원정보 등이다.²⁴⁾ 그러나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영국은 한국과 달리 주민번호가 없어 개인의 전과와 관련 정보가 유관 기관에 흩어져 있어 협의체인 포럼에서 각 기관이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Stage 3에서 전과 및 범죄사실의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는 경찰과 교정당국이다. 따라서 각 기관 간 비교적 평등한 입장에서 정보 공개 여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 경찰과 보건소 및 아동보호기관 사이에 대등한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지에 대

한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다만 앞서 영국 법과 교수의 언급처럼 제도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가 클 수는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다. 자칫 공개될 경우에는 이른바 사회적 낙인찍기가 발생해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예방과 프라이버시권의 균형이 이 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보장할 것이다.²⁵⁾ 또한 제도의 시행에 앞서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잘 참고하여 운영의 묘를 잘 찾는 것 역시 필요하다. 아무쪼록 이제 데이트폭력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한국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조 의 행

(신한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24) 김용현, *op. cit.*

25) 오보람, “데이트폭력 ‘위험수위’”, 주간한국, 2016. 3. 12: http://m.hankooki.com/m_dh_view.php?WM=dh&FILE_NO=ZGgyMDE2MDMxMjA4MzE1OTEzNzc4MC5odG0=&ref=m.search.naver.com (2016년 6월 6일).

참고문헌

- 경찰청 보도 자료,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사이버 경찰청 2016. 2. 2: <http://police.go.kr/m/bbs/view.do?ntId=18111&cbbsId=B0000011&menuNo=2600013&delCode=0> (2016년 6월 5일 접속).
- 김훈남, “데이트 폭력 ‘클레어법’ 보단 초기 신고를”, 머니투데이, 2016. 3. 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30713100732260> (2016. 6. 5 접속).
- 김진수, “‘데이트폭력과의 전쟁’ 나선 김현기 경찰청 수사기획관”, 신동아, 2016. 3. 24: <http://shindonga.donga.com/3/all/13/528310/1> (2016년 6월 3일 접속).
- 오보람, “데이트폭력 ‘위험수위’”, 주간한국, 2016. 3. 12: http://m.hankooki.com/m_dh_view.php?WM=dh&FILE_NO=ZGgyMDE2MDMxMjA4MzE1OTEzNzc4MC5odG0=&ref=search.naver.com (2016년 6월 6일 접속).
- 이상일, “데이트폭력 형사가 직접 경고한다... 클레어법 제정 추진”, 미디어펜, 2016년 2월 2일: <http://www.mediapen.com/news/view/115971> (2016년 6월 5일 접속).
- 임유진, “데이트 폭력 76.6%가 전과남...전과기록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 도입해야”, 아시아 투데이, 2016. 1. 25: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125010015623> (2016년 6월 5일 접속).
- Home Office, The Rt Hon Norman Baker and The Rt Hon Theresa May MP, “News story: Clare’s law to become a national scheme”, Part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https://www.gov.uk/government/news/dares-law-to-become-a-national-scheme> (2016년 5월 15일 접속).
- Carlin, Brendan, “Clare’s law: After mother’s brutal murder, women to get right to check abusive partners’ criminal records”, DailyMail, 2011. 7. 16: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015564/Clares-law-After-mothers-brutal-murder-women-right-check-abusive-partners-criminal-records.html> (2016년 4월 20일 접속).
- Cullen, Eliie, 「Clare’s Law is saving lives one year on」, Nottingham Post, 2015. 3. 3: <http://www.nottinghampost.com/Clare-s-Law-saving-lives-year/story-26113351-detail/story.html> (2016년 6월 10일 접속).
- Dar, Aliyah, “Domestic violence statistics SN/SG/950”, House of Commons Library, 2013. 12. 24. <http://www.crimeandinvestigation.co.uk/> (2016년 5월 30일 접속).
- Meikle, James, “Women may be warned of partners’ violent pasts under new ‘Clare’s Law’”, The Guardian, 2011. 7. 17: <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1/jul/17/women-warned-partners-dares-law> (2016년 5월 30일 접속).
- Petre, Jonathan, “Women will get right to ask for new boyfriends’ police files under controversial Clare’s Law initiative”, DailyMail, 2012. 7. 14: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173645/Clares-Law-initiative-Women-right-ask-new-boyfriends-police-files.html> (2016년 5월 25일 접속).
- The Metropolitan Police, “Clare’s Law: The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http://content.met.police.uk/Article/Domestic-Violence-Disclosure-Scheme---Clares-Law/1400022792812/1400022792812> (2016년 3월 30일 접속).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CPS),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Crime Report, 2012-2013, Public Accountability and Inclusion Directorate, 2013: https://www.cps.gov.uk/publications/docs/cps_vawg_report_2014.pdf (2016년 6월 3일 접속).
- Woodhouse, John and Dempsey, Noel, 「Domestic violence in England and Wales」, 『Briefing Paper』 No.6337(House of Commons Library, 2016. 5. 6).